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67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박지혜 · 김성환 · 이개호
박수현 · 박지원 · 이병진
황명선 · 이재강 · 김 윤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 수립 또는 사업 시행 단계에서만 의무화되어 있을 뿐, 현행법상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법률 시행 이후에야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 등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

출할 때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의장과 기후영향평가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평가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영향평가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기후영향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기후영향평가서를 의장과 기후영향평가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u> <u>③ 위원회가 기후변화에 영향</u>

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을 평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후영향평가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평가서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